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2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소병훈·박 정·백승아

윤준병 • 정성호 • 윤건영

추미애 • 김준혁 • 안태준

허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사업주는 10일의 유급 휴가를 1회 한정 나누어 사용하도록 부여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이하 "난임 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보장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친 후에도 육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며, 특히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초기 육아 부담이 증가해 휴가 확대의 필요성 및 제도 개선 의견이 제기됨. 또한,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휴가 일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를 출산한 경우 유급 21일로 확대해 2회 한정 분리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유급 3일)로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1회 한정 나누어 사용)로 주도록 하던 것을, 유급 14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1일)로 확대하고 2회 한정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
- 나.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3일 이내(유급 1일) 주도록 하던 것을, 연간 7일 이내(유급 3일)로 확대하고자 함(제18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10일"을 "14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3일"을 "7일"로, "1일"을 "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난임치료휴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	
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	
구하는 경우에 <u>10일</u> 의 휴가를	<u>14일(배우자가 한</u>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u>경우에는 21일)</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u>1회</u> 에	④ <u>2회</u>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	
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	
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에 연간 <u>3일</u> 이내의 휴가를 주	<u>7일</u>
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u>1일</u> 은	<u>3일</u>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	

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	
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